

기장세액공제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시	
신청인	① 상 호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
	③ 성 명			④ 생년월일			
	⑤ 주 소						
신 청 내 용							
⑥ 과 세 기 간		년		월		일부터	
		년		월		일까지	
⑦ 업태·종목				⑧ 총수입금액			
공제세액 계산	⑨ 총 합 소 득 금 액						
	⑩ 기 장 소 득 금 액						
	⑪ 총 합 소 득 산 출 세 액						
	⑫ 공제대상세액(⑩/⑨×⑪×20%)						
	⑬ 공 제 한 도 액			100만원			
	⑭ 공제할 세액(⑫ 또는 ⑬ 중 작은 금액)						

「소득세법」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작 성 방 법

- 1. 이 서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,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.
- 2. ⑨란과 ⑪란은 사업자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적고, ⑩란은 전체사업장(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 해당 사업장)의 기장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- 3. ⑫란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2010년 귀속분만 5%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4. ⑬공제한도액은 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기장세액공제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